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2.

발 의 자 : 유동수 · 김병기 · 민병덕
김남근 · 박민규 · 강준현
윤준병 · 허성무 · 최혁진
박상혁 · 이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또한,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,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

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
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 신설 등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(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)을 국립묘지 내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매장의 방법) ① 묘에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 관에 넣어 매장한다.

- ② 묘에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유골을 종이로 감싼 채 나무로 된 유골함으로 덮은 후 매장한다.

- ③ 매장의 깊이 등 그 밖에 매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내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안장상태 점검 요청 등)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신이나 유골(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)의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검을 요청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안장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점검 요청의 절차·방법 및 점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이장) ①·② (생략)	제7조(이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<u>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(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)을 국립묘지 내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제12조의2(매장의 방법) ① <u>묘에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 관에 넣어 매장한다.</u> ② <u>묘에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유골을 종이로 감싼 채 나무로 된 유골함으로 덮은 후 매장한다.</u> ③ <u>매장의 깊이 등 그 밖에 매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6조(안장비용) ① (생략)	제16조(안장비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② ----- -----

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
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
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내
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
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
발생하는 비용

제16조의2(안장상태 점검 요청
등)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
람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장관에
게 시신이나 유골(자연장지에
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)의 안
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
다. 이 경우 점검을 요청받은
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
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
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안장상
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
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점검 요청의
절차·방법 및 점검의 방법 등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